

청주지방법원 2024. 6. 18 선고 2023가단7762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충북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

담당변호사 신인순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2024. 5. 28.

판 결 선 고 2024. 6. 18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20,367,908원 및 그 중 20,126,508원에 대하여 2023. 9. 20.부터 2024. 1. 11.까지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들 사이에서 2022. 10. 19. 체결된 합의해제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 B은 피고 A에게 각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22. 10. 20. 접수 제10397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20. 3. 19. 접수 제267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.

2. 인정 근거

가. 피고 1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나. 피고 2 :
자백간주(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, 제1항)

판사 송경근

별지